

=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2. 4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8. 2. 5

다. 상 정 일 자 :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08. 2.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임석진 세무과장)

가. 제안이유

부산항만공사의 공공적 성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도서관법등 관계법령의 개정 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조건 명확화 (안 제5조의2)
- 도서관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개정 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변경 (안 제7조, 제9조)
- 구세조례에 규정된 농협중앙회에 대한 경감사항을 감면조례로 이관 (안 제9조의2)
- 재래시장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을 비 거주용 부동산으로 한정 (안 제14조)
- 부산항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로 전환 (안 제23조)

3.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제266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조례개정안은

공익법인으로 설립된 부산항만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방법을 「별도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구세조례」에 규정 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경감조항을 「구세감면조례」로 이관하면서 재래시장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을 비거주용 부동산으로 축소 조정하는 한편 도서관법, 문화재보호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바꾸려는 것으로

나. 합법성 측면에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공익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과세면제와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적법성 부분은 문제가 없음.

라. 다음, 타당성 측면은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 전환 외에는 개정사항 대부분이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이거나,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

마. 우리구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이 제도 시행이후 아직까지 신청주택이 없어 세수결손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농협중앙회 구관시설에 대한 감면은 우리구 관내에 소재한 5개지점 모두 구관사업을 하지 않아 감면대상이 아니고, 이밖에,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과세방법 변경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우리구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라.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법적근거와 조례개정의 타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세입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